

사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(제10조 관련)

구분	시설기준 및 수용인원
1. 공통사항	<p>가.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.</p> <p>나. 입소자·이용자의 건강·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다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, 소화 및 비상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라.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마. 적당한 냉방장치·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바. 상담실, 사무실, 식당,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사.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·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아. 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(입소생활시설),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단기보호시설, 제5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이 남·녀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침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고,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</p>
2. 정신질환자생활시설(입소생활시설)	<p>가. 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입소자가 24시간 휴식,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응접실과 침실을 말하는 거실(복도·통로, 관리인 침실, 사무실, 상담실, 다락, 식당, 조리실, 화장실, 목욕실, 세탁장, 건조장 등은 제외한다)의 면적(이하 이 표에서 "거실면적"이라 한다)은 입소자 1명당 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</p>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) 응접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접실로 인정한다) 3) 침실 4) 목욕실 5) 재활훈련실 6)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 7) 세탁장 및 건조장 <p>나. 정원: 입소정원 50명 이하</p>
3. 정신질환자지역 사회재활 시설	주간 재활 시설	<p>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2) 재활훈련실의 면적은 이용자 1명당 3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) 재활훈련실 3) 휴게실 4) 집단활동실
	공동생활가정	<p>가. 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) 응접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접실로 인정한다) 3) 침실(입소정원 4명인 시설은 1실당 2명 이하, 입소정원 5명 이상인 시설은 1실당 3명 이하) 4) 목욕실 5) 세탁장 및 건조장 6) 상담실 및 사무실(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) <p>나. 정원: 입소정원 4명 이상 6명 이하</p>
	단기보호시설	<p>가. 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 2) 응접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접실로 인정한다) 3) 침실 4) 목욕실 5) 재활훈련실

	<p>6)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</p> <p>7) 세탁장 및 건조장</p> <p>나. 정원: 입소정원 25명 이하</p>
4.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	<p>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2) 직업재활훈련실의 면적은 이용자 1명당 3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</p> <p>2) 직업재활훈련실</p> <p>3) 재활상담실, 사무실 및 휴게실(재활상담실, 사무실 및 휴게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)</p> <p>4) 근로활동을 위한 시설</p>
5. 중독자재활시설	<p>가. 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</p> <p>2) 응접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접실로 인정한다)</p> <p>3) 침실</p> <p>4) 목욕실</p> <p>5)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</p> <p>6) 휴게실</p> <p>7) 세탁장 및 건조장</p> <p>나. 정원: 입소정원 50명 이하</p>
6. 정신질환자생산물판매시설	<p>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2) 판매장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</p> <p>2) 판매장</p> <p>3) 상담실 및 사무실(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)</p>
7. 정신질환자종합시설	<p>시설: 다음의 시설</p> <p>1) 강당 또는 회의실</p> <p>2) 2개 이상을 결합한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</p>

※ 비고

1. 사회복지시설(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제외한다)의 장은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추가로 입소 또는

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2. 제6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산물판매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이용하거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여야 한다.